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중소기업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중소기업부 소속기관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정원 1명(7급 1명) 및 중소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24. ~ 12.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란 및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2급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급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별표 2 중 총계 “488”을 “486”으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4”로 하며,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4”를 “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81”을 “4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4”를 “46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79”를 “874”로 하고, 일반직 계 “531”을 “52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6”을 “52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소기업부

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8</u>	<u>486</u>	-2
•	•	•	
•	•	•	
별정직 계	<u>5</u>	<u>4</u>	-1
•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u>4</u>	<u>3</u>	-1
일반직 계	<u>481</u>	<u>480</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64</u>	<u>463</u>	-1
•	•	•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9</u>	<u>874</u>	-5
·	·	·	
·	·	·	
일반직 계	<u>531</u>	<u>526</u>	-5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26</u>	<u>521</u>	-5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1